

#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

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상남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
2020년 8월 27일  
경상남도지사

1. 처분당사자 :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2. 처분내용

- 실내\*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. 단,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

\* 실내 : 버스, 지하철, 선박, 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

- 실외에서 집회·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

-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, 버스·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자·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 지침 준수를 명할 것

3.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2호~제2의4호

4. 처분사유 :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

5. 처분기간 : 2020. 8. 28.(목) ~ 별도해제시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8. 28.(목) 00시 부터
7.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2호~제2의4호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 
(단,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제도기간)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9. 처분 담당자 : 경상남도 생활방역추진단장. 끝.